

의안 번호	2448	[울산광역시 중구 무연고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] 검 토 보 고 서
----------	------	--

1. 검토경과

- 제출 일자 : 2025. 6. 30.(월)
- 제출 자 : 울산광역시 중구청장
- 위원회 회부일자 : 2025. 6. 30.(월)
- 위원회 심사일자 : 2025. 7. 16.(수)

2. 제안이유

- 공영장례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공영장례의 지원 범위를 늘리고 최근 고독사의 증가로 무연고 사망자의 유품정리 필요성이 대두되어 유품 정리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- 제명 변경
 - (현행) 울산광역시 중구 무연고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
 - (변경) 울산광역시 중구 공영장례 지원 조례
- 상위법 명시 및 지원 내용 추가(안 제1조, 제3조 ~ 제7조)
 - 위임 근거가 되는 「장사 등에 관한 법률」 명시
 - 지원 내용에 ‘유품정리’ 추가
- 저소득층 정의 범위 확대 및 유품정리 용어 정의 신설(안 제2조)
 - 저소득층 범위에 ‘긴급지원대상자’ 추가
- 지원대상 범위 확대(안 제4조)
 - 중구 거주자 → 중구 거주자이거나 중구에서 사망한 사람
- 지원신청 및 지원결정 등(안 제6조, 별지 제1호 및 제2호서식)
 - 지원신청 대상자 추가

- : 연고자, 이웃사람 → 연고자, 이웃사람, 장례 수행자
- 지원신청에 따른 비용 청구서 제출 및 비용 지급기한 신설
- : 지원신청에 따른 비용 청구 시 7일 이내 지급하도록 규정
- 지원신청 관련 별지 서식 정비 및 별지 제2호서식 신설

4. 근거법규

- 「장사 등에 관한 법률」 제12조, 제12조의2

5. 검토의견

- 최근 고독사 및 무연고 사망자가 늘어나면서 이들이 남긴 유품정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
- 장례비용은 「장사 등에 관한 법률」 및 본 조례에 따라 지원이 가능하나 유품은 처리할 주체 및 유품정리 비용의 지원 근거가 없어 유품 처리에 문제가 발생하였음
- 본 조례안은 무연고 사망자 등의 유품처리에 대한 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, 공영장례 및 유품처리 지원대상 범위를 확대하며 비용 청구 방법 및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
- 제반 규정을 검토한바,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 됨.

근 거 법 규

「장사 등에 관한 법률」

제12조(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) ① 시장등은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시신으로서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시신에 대해서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례의식을 행한 후 일정 기간 매장하거나 화장하여 봉안하여야 한다. 다만,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등은 무연고 사망자가 사망하기 전에 장기적·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은 사람 또는 종교활동 및 사회적 연대활동 등을 함께 한 사람, 사망한 사람이 사망하기 전에 본인이 서명한 문서 또는 「민법」의 유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유언의 방식으로 지정한 사람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장례의식을 주관하게 할 수 있다.

③ 시장등은 제1항 따라 무연고 시신(無緣故 屍身) 등을 처리하기 전에 무연고 사망자가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(이하 “국가유공자등”이라 한다)인지 여부를 행정정보 시스템을 통하여 확인하고, 국가유공자등인 경우 관할 지방보훈청(지방보훈지청을 포함한다)과 함께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사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
④ 시장등은 제1항에 따라 무연고 시신 등을 처리한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하며, 공고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.

⑤ 제1항에 따른 매장 또는 봉안의 기간과 그 기간이 끝난 후의 처리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⑥ 제1항에 따라 시장등이 무연고 시신 등을 처리하는 경우 장례의식 등 최소한의 존엄이 보장되도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장례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.

⑦ 시장등은 제1항 및 제6항에 따른 업무를 장사업무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

제12조의2(유류금품의 처분) 시장등은 제12조에 따라 무연고 시신 등을 처리한 때에는 사망자가 유류(遺留)한 금전 또는 유가증권으로 그 비용에 충당하고, 그 부족액은 유류물품의 매각대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.